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14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김태선 · 장철민 · 허영
허종식 · 이용우 · 김주영
정춘생 · 윤후덕 · 박민규
박홍배 · 한민수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실태조사) ①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포장폐기물
2. 1회용품
3.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억제를 위하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
2. 유통·소비 단계에서 해당 폐기물의 사용 및 관리 실태
3.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4(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실태조사) ①</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u>1. 제9조에 따른 포장폐기물</u> <u>2. 1회용품</u> <u>3.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억제를 위하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u> <u>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해당 폐기물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u> <u>2. 유통·소비 단계에서 해당 폐기물의 사용 및 관리 실태</u> <u>3.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u>

	<u>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u>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방법 및 절차, 공개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u> <u>으로 정한다.</u>
--	---